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004

발의연월일: 2025. 4. 22.

발 의 자:정점식·서일준·인요한

이인선 • 고동진 • 김 건

이상휘 · 서범수 · 최형두

강대식 · 성일종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종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로 지정하여 수산종자산업 기반조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빈번한 이상기후로 인한 수산종자 대량 폐사 문제가 심 각하여 수산종자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유지에 중대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는데, 수산종자산업은 어업 및 양식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산업인만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산종자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 수립 시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가 수산종자산업에 미

치는 영향 및 그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업무에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수산종자의 연구개발을 추가함으로써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산업 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6호 및 제14조제2항제3호 신설).

법률 제 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이상기후·기후변화가 수산종자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응방 안

제14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상기후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수산종자의 연구개발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본계획 등) ① (생 략)	제5조(기본계획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②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이상기후・기후변화가 수산		
	종자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응방안		
<u>6.</u> ~ <u>8.</u> (생 략)	<u>7.</u> ~ <u>9.</u> (현행 제6호부터 제8		
	호까지와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제14조(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① (생 략)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②		
업무를 수행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 <신 설></u>	3. 이상기후·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수산종자의 연구		
	<u>개발</u>		
<u>3.</u> ~ <u>6.</u> (생 략)	<u>4.</u> ~ <u>7.</u> (현행 제3호부터 제6		
	호까지와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